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기획위원회(일자리경제과)

의안번호	제 11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08. 17.)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서울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성북구 계좌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라. 가맹점 등록 신청 처리 기한 설정함(안 제5조제3항).

마.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바.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사.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함
(안 제8조제4항).

아.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7. 7. ~ 2022. 7. 27.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¹⁾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 : 조례의 정의에서 ‘운영대행사’를 삭제하고
- **안 제5조, 제8조, 제9조** :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변경
 - **안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1항 단서**조항 신설**²⁾ 및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 **안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항, 제3항의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변경,
 - **안 제9조**(사업 및 지원) 제1항 제4호, 공동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변경
- **안 제4조의2** :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규정 신설
 -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구 금고에 계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³⁾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 신설

2)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 기존에는 등록 제한 업종에 한하여 가맹점 등록을 제외하였으나, 사업체별 구분을 추가하여 등록을 제한(안 제5조 제2항 제4호)
 -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3항)
 - 가맹점 등록 현황을 반기별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 제4항)
 - ‘다만, 제1호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강화함(안 제5조 제5항)
 -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가맹점 재등록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안 제5조 제7항)

- **안 제8조 제4항 :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권면금액’에서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개정**
 - 권면금액의 60%이상 80% 이하의 사용시 환불 가능에서 구매건별 구매금액 총액의 60% 이상으로 변경

- **안 제8조 제5항 :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발행과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신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정정보보호법 등의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 조례안 검토 결과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와 함께 크게 증가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 과정상 도출되었던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 2022년

발행차수	상품권명	발행일	발행액	사용액	사용건수	사용률
1차	성북사랑	1월 24일	180억	156억	378,723건	86%
2차		9월 1일(예정)	100억	-	-	-

□ 2021년

발행차수	상품권명	발행일	발행액	사용액	사용건수	사용률
합계			590억	552억	1,985,016	93%
1차	성북사랑	2월 3일	180억	175억	629,395	95%
2차		7월 14일	60억	56억	318,566	93%
3차		9월 6일	150억	137억	451,901	91%
4차		11월 3일	100억	88억	285,241	88%
5차	상권회복특별지원	12월 13일	100억	96억	299,913	96%

□ 2020년

발행차수	상품권명	발행일	발행액	할인율	소요예산	
					구비	시비
총			186억원		270,000천원	2,211,900천원
1차	성북사랑	1월 17일	30억원	7%	60,000천원	199,500천원
2차		3월 23일	20억원	15%	40,000천원	293,000천원
3차		5월 20일	20억원	10%	40,000천원	193,000천원
4차		7월 14일	30억원	7%	60,000천원	199,500천원
5차		9월 17일	35억원	7%	70,000천원	232,750천원
6차	장석월	9월 21일	35억원	20%	-	757,750천원
7차	장위동	11월 9일	15억원	20%	-	324,750천원
8차	힘콧	11월 11일	1억원	10%	-	11,650천원